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, 폐교를 포함하고,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 신설) .
-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함(안 제6조의2 신설).
-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·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(안 제5조의2)

안 제5조의2(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)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(제1항), 교육부장관이 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(제2항),

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와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공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법문의 규정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예시로 ‘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·운영 현황 등’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개정안	수정의견
제5조의2(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<u>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</u> 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(이하 “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	제5조의2(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<u>구축·운영 등</u>) ① ----- ----- <u>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·운영 현황 등을 제공</u> ----- ----- -----.

2.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(안 제6조의2)

안 제6조의2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제1항에서는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의 운영·관리 원칙¹⁾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운영관리자 및 학교 교직원의 적극행정 면책 대상 업무를 ‘이 법에 따른 업무’가 아닌 ‘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’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개정안	수정의견
제6조의2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<u>이 법에 따른 업무를</u>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	제6조의2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 ----- ----- ----- <u>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- 1)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원칙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,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